

의안 번호	2019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심사보고서</p>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 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11. 10.(목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2. 11. 10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2. 12. 5.(월)

2. 제안설명 요지(정책사업단장 민병률)

가. 제안이유

인구정책사업을 하는 기업·단체 등에 대한 경비지원에 관한 부적정한 인용조문을 정정하고 위원회 규정순서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위원회에 관한 일반조례 규정 내용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경비지원 사업대상 인용 조문 정정(안 제4조)
- 위원회 규정 순서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9조, 제10조 ~ 제13조)
-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8조, 제12조)

다. 근거법규

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7조

3. 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경비지원에 관한 부적정한 인용조문을 정정하고 위원회 규정순서 및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저출산 · 고령사회기본법

제7조(인구정책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